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67
------	-----

2023. 0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동욱 의원 외 3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욱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환경보전사업, 신기술 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육성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미래전략과제 발굴 시행 기관과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5조~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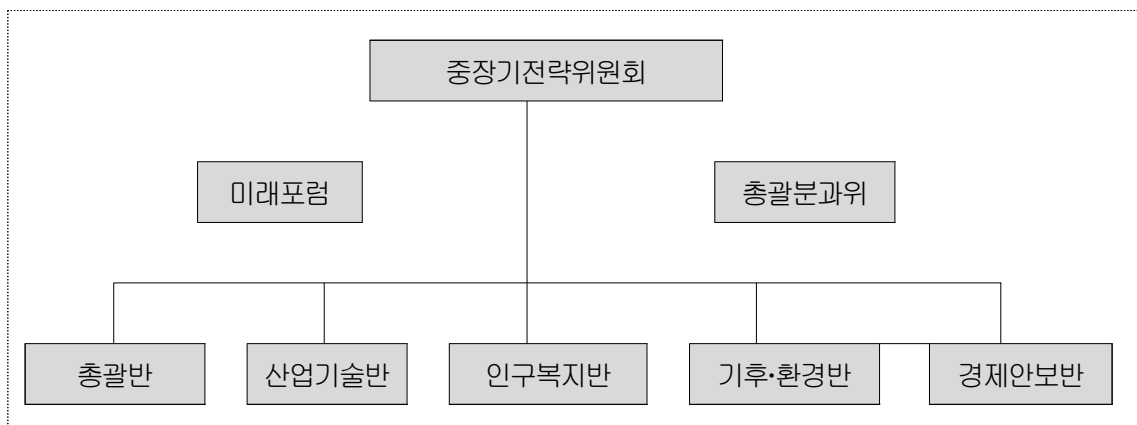
- 제정안은 서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정체성 확립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금융위기 등을 극복 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음.
- 그러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체, 사회갈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 사회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과제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등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¹⁾.
-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는 KDI 등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인구복지, 기후환경, 국제관계 등 핵심 변화 동인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경제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 〉



1) 민보경 외(2022.12.),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회미래연구원.

- 지난 3월에는 창조적 혁신을 통한 국가시스템 개혁과 경제성장 경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산업,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 거버넌스 등의 혁신을 담은 “국가미래전략” 핵심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를 수립함.
- 제정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됨.

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확립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도시경쟁력 제고를 제시함.
- 서울시의 대내·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명확히 제시함.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미래전략과제’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각각 정의함.

- 법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조화롭게 조례에 규정하여 미래전략과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됨.

(3)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미래전략과제 적용 범위를 ▶환경보전, ▶신기술기반, ▶공간개발, ▶지역주력,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사회,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전략과제 범위를 설정함.

(4)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지원이라는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됨.

(5)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안 제6조)

- 안 제5조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출자·출연·보조 연구기관이나 법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중앙부처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 ▶분야별 산업종사자 협회, 조합, 단체 등으로 규정함.
- 안 제6조는 미래전략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시책 개발, ▶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속가능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로 미래전략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음.
- 또한,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제4호의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닌 직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함.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미래전략과제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안 제8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례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정의견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 ----- --.

제 정 안	수정의견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u>대학 및 직업전문학교</u>	4. ----- <u>대학</u>
5. ~ 7. (생 략)	5. ~ 7.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u>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7조(지원사업) ----- <u>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 사업을 -----</u> -----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8조와 같음)

- 한편, 제정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행계획, 중·장기 행정계획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과 종합지원계획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사 조례들 간에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

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안을
정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삭제함(안 제5조제4호).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67
----------	--------

제안년월일 : 2023년 0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안을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삭제함(안 제5조제4호).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하고, 안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를 “대학”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u>제5조(지원대상)</u>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u>대학 및 직업전문학교</u></p> <p>5. ~ 7. (생략)</p>	<p><u>제6조(지원대상)</u> ----- <u>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u> -----</p> <p>-----</p> <p>-----</p> <p>-----</p> <p>1. ~ 3. (조례안과 같음)</p> <p>4. ----- <u>대학</u></p> <p>5. ~ 7. (조례안과 같음)</p>
<p><u>제6조(지원사업)</u>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u>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u>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제7조(지원사업)</u> ----- <u>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u> ----- <u>사업을</u> -----</p> <p>-----</p> <p>-----</p> <p>-----</p> <p>1. ~ 4. (조례안과 같음)</p>
<p><u>제7조</u> (생략)</p> <p><u>제8조</u> (생략)</p>	<p><u>제8조</u> (조례안 제7조와 같음)</p> <p><u>제5조</u> (조례안 제8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